

그에 부수되는 환경 및 보건향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3. 영락원 직하단부에 위치한 고풍저수지 (1954. 4준설)를 상수원으로하여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본군 운산면 소재지 주민들은 물론, 6만여명의 서산시민, 당진읍민등 100, 000여명에 대한 수질오염원이 문제로 커다란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많은 양돈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영락원에서 오·폐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 축산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고풍저수지로 유입되어 환경 및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고풍저수지의 수원을 식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영락원 존재조차 반대하는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으로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해 설득하고 있지만 한정된 군비를 투자하여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국민보건 향상 차원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4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시어 영락원내 오·폐수 처리장시설(정화조시설등)을 해주실 것을 장관님께 9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리오니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2. 10. 9.

건의자

서산군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 2항 제 4호 또는 제 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면제신청) ①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
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에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다.